

#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및 방향

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
# 목 차

**I. 장애인정책 환경**

**II. 장애인 편의증진정책 개요**

**III. 편의증진 5개년 계획**

**IV. 편의증진 법령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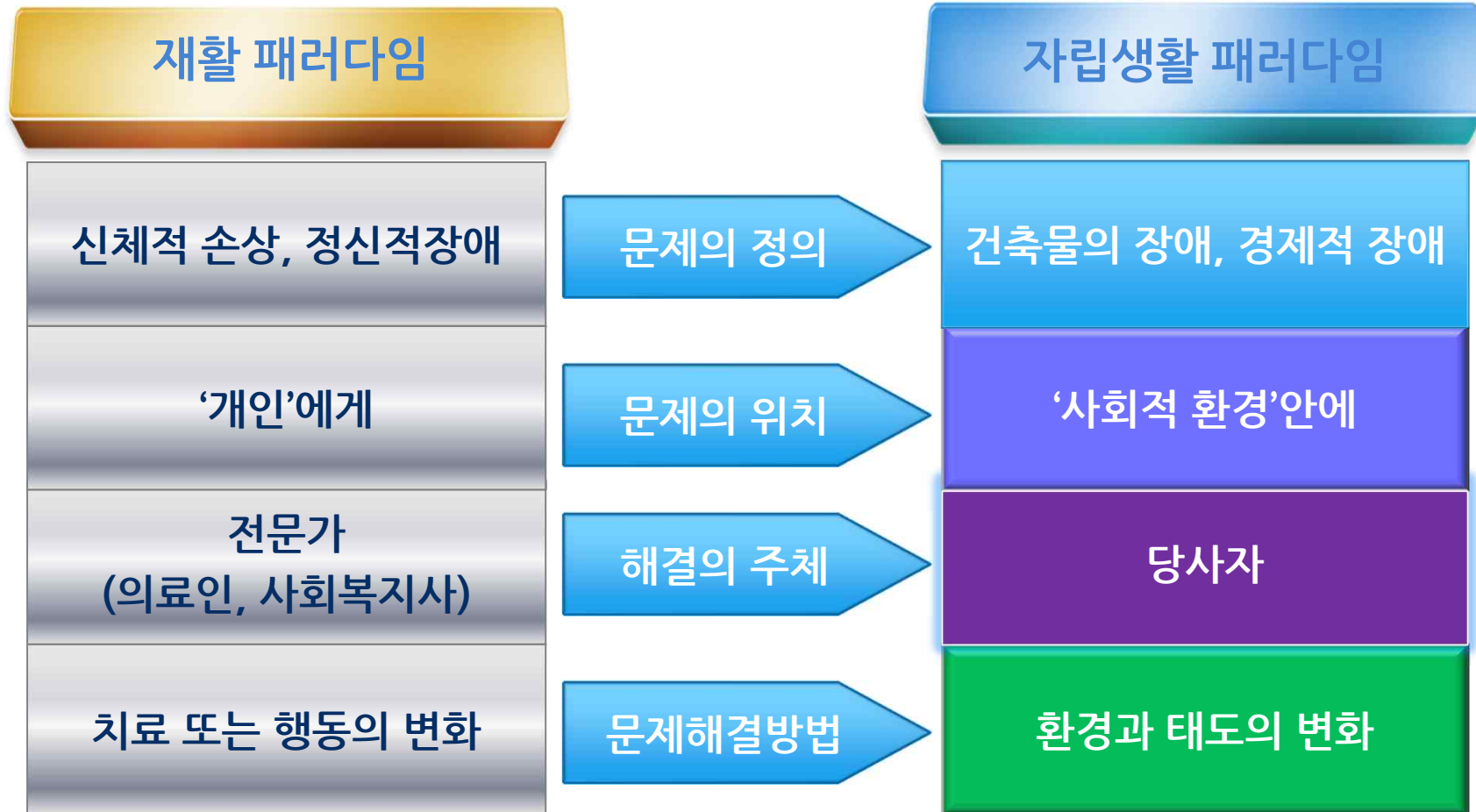
**V.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**

**VI. 장애인전용주차구역**

# I . 장애인정책 환경

# 1. 장애인복지 패러다임(인식, 구조)의 변화

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

# 1. 장애인복지 패러다임(인식, 구조)의 변화

## 장애개념의 변천

### 전통적 관점

- 부끄럼, 수치, 죄의 결과
  - 身體髮膚受之父母
  - 승려 자격제한

### 재활 모델

- 개인의 병상에 따른 개인의 문제
- Active pathology
  - Impairment
  - Functional limitation
  - Disability
- 해결책은 의학적 치료 및 재활훈련

### 사회적 모델

- 1980년대 이후 등장
-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장애개념 (2001, ICF)
- 사회가 제공한 차별과 곤란은 사회가 장애적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사라짐

# 1. 장애인복지 패러다임(인식, 구조)의 변화

## 장애 용어의 변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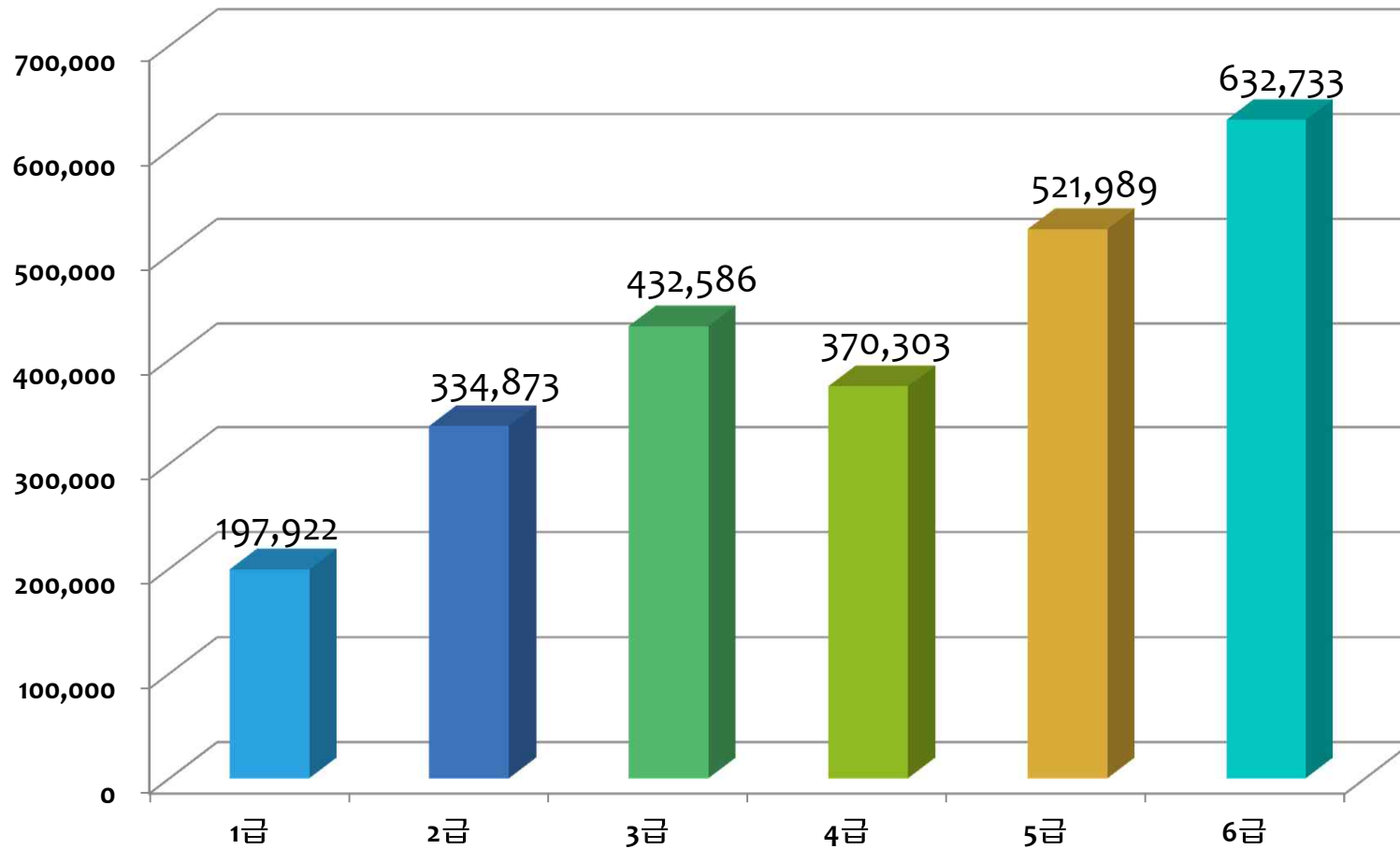
- 바보, 병신, 불구(폐질)자 → 심신장애자(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) → 장애자 → 장애인(89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)
  - 장애인과 반대되는 용어는 ‘정상인’ 이 아니고 ‘비장애인’
    - 비장애인 표현도 모든 사람들을 장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
    -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특정 집단화시키는 우려, ‘장애를 가진’ 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 방법
- ※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호킹 박사는 장애인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정상인이라고 불렀다. 그것은 특별한 요구가 해결된다면 장애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. 별도의 장애인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. 다만 그 요구가 있을 뿐이다. 그 특별한 요구가 해결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장애인이 있고, 따라서 그 용어도 영원하지는 않다.

## 2. 장애유형별 등록현황 [2,490천명 / 2015년 12월 기준]

1	지체	1,281천명(51.5%)
2	청각.언어	269천명(10.8%)
3	시각	253천명(10.1%)
4	뇌병변	251천명(10.1%)
5	지적	189천명(7.6%)
6	정신	98천명(3.9%)
7	신장	74천명(3%)
14	간	10천명(0.4%)
15	안면	2.7천명(0.1%)

기타 : 자폐성 0.8%, 장루·요루 0.6%, 호흡기 0.5%, 심장 0.2%, 뇌전증 0.3%

### 3. 등급별 장애인 현황 (2015년 12월 기준)





## 4. 장애인 분야 예산 현황 [복지부 소관 기준]

2013년도 11,134억원 → 2017년도 20,007억원(↑ 79.7%)

(‘13) 11,134억원 → (‘14) 12,714억원 → (‘15) 18,816억원 → (‘16) 19,090억원 → (‘17) 20,007억원

- ▶ 장애수당 : 1,312 → 1,326억원 (1.1% 증)
- ▶ 장애인연금 : 5,618 → 5,585억원 (0.6% 감)
- ▶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: 264 → 291억원 (10.2% 증)
- ▶ 장애인의료비 지원 : 301 → 358억원 (18.9% 증)
- ▶ 장애인활동지원 : 4,678 → 5,221억원 (11.6% 증)
- ▶ 장애아동 가족지원 : 756 → 787억원 (4.1% 증)
- ▶ 장애인일자리 지원 : 662 → 707억원 (6.8% 증)
- ▶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: 52 → 52억원 (-)
- ▶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: 393 → 344억원 (12.5% 감)
- ▶ 발달장애인지원 : 39 → 94억원 (141% 증)

## 5. 장애인 관련 법령

1980년대

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(1981. 6.)  
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(1989. 12.)

1990년대

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(1990.1.)\_고용노동부  
장애인.노인.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(1997. 4.)

2000년대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(2005. 1.)\_국토교통부  
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(2005. 7.)\_중소기업청  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(2007. 4.)  
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(2007. 5.)\_교과부  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(2008. 4.)  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(2008. 7.)

2010년 이후

장애인 연금법 제정(2010. 4.)  
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(2011. 1.)  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(2011. 3.)\_고용노동부  
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(2011. 8.)  
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(2015.5.)  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2015.12.)

## Ⅱ. 장애인 편의증진정책 개요

# 1. 편의시설 설치관련 제도의 변화

1980년대

장애인복지법

※ 교통시설 및 공용시설의 장애인 이용에 대해 대책 강구

1990년대

장애인.노인.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

2000년대

장애인.노인.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

- 제1차 편의시설 국가종합 5개년 계획(' 00 ~' 04)
-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(' 05 ~' 09)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※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(2005. 1) ->국토교통부

2010년대

장애인.노인.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

-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(' 10 ~' 14)

2015년

장애인.노인.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

-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(' 15 ~' 19)
- 장애인등편의법 개정( '15.7) - 후속작업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완료
-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의무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) 적용( '15. 7)

2016년

장애인.노인.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
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등 개편
- 장애인등편의법 개정(' 16 하반기) - 시행령, 시행규칙

## 2. 장애인 편의증진정책 개요

### 제도개요

#### ○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

- 자연·도시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(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), 공동주택(아파트, 다세대 주택 등), 통신시설

※ 도로와 교통수단,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

#### ○ 편의시설의 종류

- [대분류] 5종(매개시설, 내부시설, 위생시설, 안내시설, 기타시설)
- [중분류] 20종(접근로, 출입구, 대변기, 점자블럭, 관람열람석 등)
- [소분류] 89종(단차높이, 승강기 크기, 화장실 크기, 피난설비 등)

#### ○ 편의시설 설치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

- [시정명령] 1년의 범위내에서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함
- [이행강제금] 시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
- [벌금]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

## 2. 장애인 편의증진정책 개요

### 편의시설 설치 실태(2013년)

편의시설의 종류	대상편의 시설수	설치수	적정 설치수	설치율	적정 설치율
매개시설	2,729,583	1,897,877	1,706,129	69.5%	62.5%
내부시설	1,929,421	1,555,422	1,392,127	80.6%	72.2%
위생시설	1,250,126	583,869	478,392	46.7%	38.3%
안내시설	195,730	82,643	70,711	42.2%	36.1%
기타시설	200,514	163,868	147,789	81.7%	73.7%
계	6,305,374	4,283,679	3,795,148	67.9%	60.2%

## 2. 장애인 편의증진정책 개요

### 편의시설 관련 단체 현황

- **지체장애인편의지원센터(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)**
  - 중앙회 :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보조
  - 시도지원센터(16개) : 시도에서 운영비 보조
  - 시군구(181개) :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 보조
- **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(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)**
  - 복지부에서 운영비 지원
- **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**
  - 34개 지자체에서 운영중
  - ※ 장애인단체 간부, 시민단체 간부, 건축관련 전문가등으로 구성

## Ⅲ. 편의증진 5개년 계획



# 1. 제1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('00~'04)

## 기본방향

###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

- 건축물 등의 편의시설 확충
- 주거환경 개선 매뉴얼 개발 및 보급
- 장애인주택 개조비용 보조
- 편의시설 안내지도 제작 및 배포

### 교통환경 개선

-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
- 특별운송서비스 실시
-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확충
-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 확대

### 사회환경 개선

- 교육·홍보강화
- 편의증진요원의 확충
-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
-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확충

### 실태점검 및 평가

- 주기적인 설치실태 조사 및 점검
- 편의시설 설치 실태 평가조사

# 1. 제1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 ('00~'04)

## 주요성과

### ○ 편의증진법 개정 등 제도 개선

- 편의증진 심의회 설치 : '03.12 법 개정, '04.10월 구성
- 편의시설지원센터, 편의시설 홈페이지 등 지원체계 구축

### ○ 편의증진법 개정 등 제도 개선

- 의원, 미용실 등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편입('05)
- 국토교통부 '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' 제정 ('05. 1. 27)
-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대상 시설 확대(15종->21종), 비율 3->7%

### ○ 편의시설 설치 확충

- '03년 전수조사결과 '98년 대비 편의시설 설치율 대폭 확대 : 47.4% → 75.8%
- 행정기관 청사 등 정비대상시설 : '00. 74.7% → '01년말 98.6%
- 특별운송서비스 : 특장차 26대, 셔틀버스 56대, 콜택시 183대

## 2. 제2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('05~'09)

### 기본방향

공공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

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

생활공간의 주거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

지속적 실태점검 및 평가

편의증진심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



장애물 없는  
사회 실현을 통한  
장애인 등의  
사회활동 참여와  
복지증진

## 2. 제2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('05~'09)

### 주요성과

- **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**
  - 의원.제과점.미용실 등 대상편입('05.7)
  - 이동안내.수화통역 등 인적서비스 제공 등
  - 사전승인시 확인절차 마련, 건축사 예비시험 법령과목에 편의증진법 포함('05.7)
- **생활공간 전반(주거, 교육, 이동편의)의 편의증진**
  - **공동주택(아파트)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( '05. 7)**
  - 농어촌 장애인의 주택개조 지원( '06~), 임대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
- **사회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**
  - **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및 시행( ' 08.7월)**
  -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
- **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**
  - '05. 교통시설, '06. 지자체 청사, '07. 문화 및 집회시설, '09. 만족도 조사

# 3.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('10~'14)

**비전**

**편의증진을 통한 통합적 사회환경실현**

**추진 목표**

편의시설 설치율 88%, 적정설치율 70%  
 - 공공기관 설치율 95%, 적정설치율 85%

**추진 방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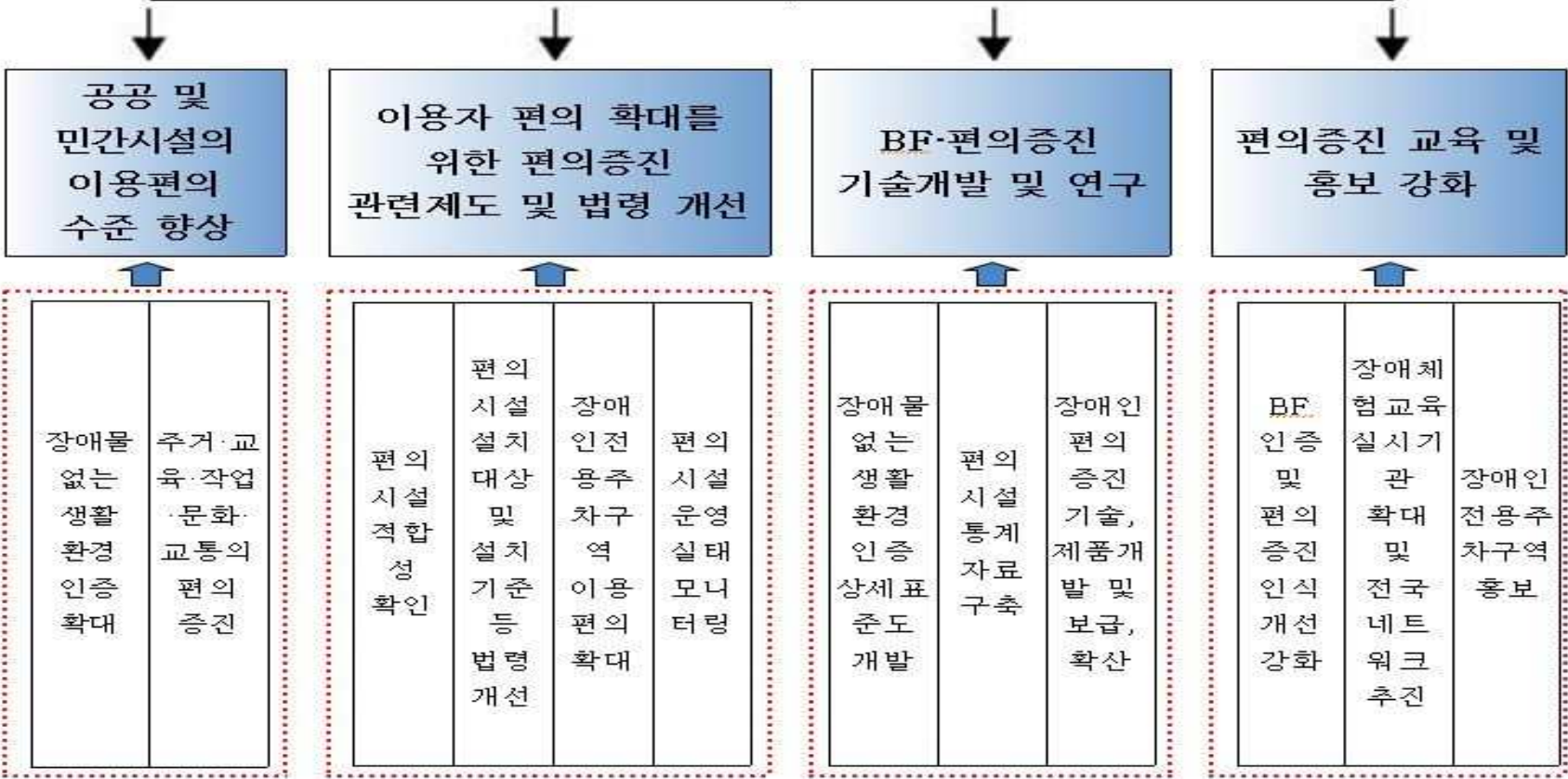
-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
- “무장애” 건축물의 보편화

**추진 과제**

분야별편의시설 및 서비스 강화	제도 및 법령 개선	기술개발 및 연구	인식개선 및 정책홍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공공시설의 편의증진</li> <li>▪ 주거환경의 편의증진</li> <li>▪ 교육환경의 편의증진</li> <li>▪ 작업환경의 편의증진</li> <li>▪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증진</li> <li>▪ 문화시설의 편의증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적합성심사 강화</li> <li>▪ 편의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개선</li> <li>▪ BF인증제도 활성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상세표준도 제작</li> <li>▪ 장애인재난방지시스템개발</li> <li>▪ 편의시설 자동체크시스템 개발</li> <li>▪ 이용자별 편의시설 설계지침 연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편의증진관련 종합정보 제공</li> <li>▪ 인식개선 강화</li> <li>▪ 정책홍보 실시</li> </ul>

# 4. 제4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('15~'19)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편의수준 향상





## 4. 제4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('15~'19)

### 신규추진계획

-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BF) 의무 취득
  - 연간 1천여 건의 청사,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BF인증 실시
  - BF 상세표준도 제작 및 배포 ('16)
- 편의시설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'적합성 확인 업무' 법제화에 따라 적합성 확인 의무 사항의 이행 점검
  - 연간 5만건의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실시 (연간 5만건)
  -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 임의 철거 등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(연간 2천건)
- BF 및 편의증진 기술 및 연구
  - 스마트폰 앱 형태로 복지로 '우리동네 복지시설' 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
  -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관한 연구, BF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
- 편의증진 인식 개선 강화
  - 편의증진 교육을 건축사 사무소 종사자 등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건축사 보수교육 과목에 포함되도록 추진
  - 편의증진 국제 심포지엄 개최

## **IV. 편의증진 법령**



# 『장애인등 편의법』 주요개정 내용

##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

### ○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(안 제9조의2, 3 신설)

-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 등의 단계부터 미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

#### 제9조의2(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)

-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(「건축법」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)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 『장애인등 편의법』 주요개정 내용

##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

### 제9조의3(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)

-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 『장애인등 편의법』 주요개정 내용

##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(BF)

### ○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시행[안 제10조의2~제10조의7 신설]

-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

# 『장애인등 편의법』 주요개정 내용

##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(BF)

### 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, 제10조의5,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“보건복지부장관 등” 이라 한대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유도 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“인증” 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
-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 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·절차, 인증기관 지정 기준·절차, 인증 비용의 부담,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(이하 “공동부령” 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# 『장애인등 편의법』 주요개정 내용

##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(BF)

### 제10조의3(인증의 유효기간)

-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.
-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의4(인증의 표시)

-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.
-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의5(인증의 취소)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2.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# 『장애인등 편의법』 주요개정 내용

##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(BF)

### 제10조의6(인증기관 지정의 취소)

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
3.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4.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
5.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의7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5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 『장애인등 편의법』 주요개정 내용

##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관련

### 제17조[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]

-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·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.
-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
-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·절차,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·절차,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『장애인등 편의법』 주요개정 내용

## 기타 주요 개정 내용

1. 시설주관기관에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추가(제2조)
2. 편의시설 설치 및 인식개선 교육(제14조의 2)
3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(교통관련) 공무원 규정 신설(제17조제6항)



# 『장애인등 편의법』 주요개정 내용

##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

### 1.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범위 규정(시행령, 제5조의2)
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경검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'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' 받도록 함

### 2.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기준 마련(시행령, 제8조)

-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나 경우 최대 2년까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

### 3. 장애인전용주차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규정(시행령, 제13조)

-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, 주차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

### 4.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의무 및 적합성 대행기관 근거 마련(시행규칙, 제3조의2, 3)

- 건축허가나 처분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와 반드시 협의토록 규정

# 『장애인등 편의법』 하위법령 개정 추진

## 주요 내용

### ○ 시행령

-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(보호자명의 렌터차량, 고장·수리에 따른 단기렌터차량 등)
- 『건축법 시행령』 개정사항 반영 및 『교통약자법』에 규정된 내용 정비
- 신축 건물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
-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 설치비율 상향(0.5%→1%, 관광숙박시설은 3%)
- 공연장, 휴게소 등에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

### ○ 시행규칙
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내용 추가
- 전동휠체어 고려, 출입구(문)의 유효폭 확대(0.8m→0.9m)
- 장애인용화장실 출입구(문) 유효폭 확대, 유효바닥면적 확대(1.4 x 1.8 →1.6 x 2.0m),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
-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세부기준 규정, 무대의 경사로 설치 등

## **V.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**

# ● 장애물 없는(Barrier Free) 생활환경 인증

## Barrier Free 환경이란?



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



누가 이용하여도 불편이 없는 환경

- 처음부터 시설물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방법
- 기존 시설물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

장애물 없는(Barrier Free) 생활환경 인증

# ● 장애물없는(Barrier Free) 생활환경 인증

## BF인증의 의의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,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·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

## BF인증제도 주요 연혁

-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」( 2007년 4월 5일)
- 인증기관(장애인개발원, 토지공사) 지정( '07.9월)
-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정[국토부령, 2010. 7. 9]
- 장애인고용공단 인증기관 추가 지정( '13.9)
- 「장애인등 편의법」 개정(2015.7.29시행) BF인증 법적 근거 마련, 공공기관 인증 의무화
- 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」 개정(복지부령, 2015.8.3)

# ● 장애물 없는(Barrier Free) 생활환경 인증

## BF인증의 수행기관

### ● 인증주무기관

-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arrier Free) 인증제도의 운영을 총괄
- 보건복지부·국토교통부

### ● 인증기관

- 인증 신청서의 접수, 인증대상의 심사·심의
-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-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
- 한국장애인개발원 · 한국토지주택공사(LH공사) · 장애인고용공단



# ● 장애물 없는(Barrier Free) 생활환경 인증

BF인증대상

## 인 증 대 상

개별시설인증

도 로

공 원

여객 시설

건 축 물

교통 수단

지역 인증

그 밖에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# ● 장애물 없는(Barrier Free) 생활환경 인증

## BF인증 신청자격

- 소유자, 건축주, 시공자 또는 관리자

## BF인증 종류

- **예비 인증**  
: 인증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  
※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 
그렇지 않은 경우 예비인증취득 취소됨
- **본 인증**  
: 건축물의 공사완료 후



# ● 장애물 없는(Barrier Free) 생활환경 인증

## BF인증등급

1. 최우수(★★★) : 심사기준 만점의 90% 이상(1등급)
2. 우수 (★★) : 심사기준 만점의 80% 이상 90% 미만(2등급)
3. 일반 (\*) : 심사기준 만점의 70%이상 80%미만인 경우(3등급)

※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 
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않음

## BF인증유효기간

- 예비 인증 : 본인증신청전
- 본 인증 : 5년
- ※ 사후관리 , 인증연장신청

# ● 장애물 없는(Barrier Free) 생활환경 인증

## BF인증 현황(2016.12월 기준)

- 2008~2016년 까지 1,376건(예비인증 1,074 / 본인증 302건)
  - 2015년 까지는 747건(예비인증 529, 본인증 218건)
- 대상별
  - 건축물 1,280건, 여객시설 78건, 기타 18건
- 등급별
  - 최우수 290건, 우수 988건, 일반 98건
- 인증기관별
  - 장애인개발원 1,044건 / 토지주택공사 260건 / 장애인고용공단 72건
- 인증제 의무화 이후 인증 추이
  - (인증신청) 15.8~12월 190건('14년 동기간의 77건 대비 247% 증가)
  - (인증실적) '16.1~12월 629건('15년 188건 대비 335% 증가)

# ● 장애물 없는(Barrier Free) 생활환경 인증

## BF인증제도 추진 방향

- 인증기관 확대
  - 현재 4개소, 공모(7월)를 통해 추가 지정(9월,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)
- 인증인력 증원(장애인개발원)
  - '16년 8명 증원, '17년 5명 추가 증원
- 민간 참여 인센티브 마련
  - 장애인화장실 건축, 바닥면적 제외(건축법시행령 개정, 국토부 협의)
    - \*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('16.1월, 건축법시행령 개정 완료)
- 인증수수료 단가 인상
  - 타 인증에 비해 낮은 수수료 현실화(현재, 본인증 403만원, 예비 286만원)
- 인증 운영기관 지정
  - 인증기관 총괄, 정책자문기능 강화
  - 인증기관 교육·기술지원, 인증업무 투명성 확보, 인증 사후관리 등 수행



# ● 장애물 없는(Barrier Free) 생활환경 인증

## 유니버설디자인(Universal Design)

- (의미) 장애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, 시설, 설비를 설계하는 것
- \* (디자인 원칙) 공평한 사용, 사용의 융통성,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, 쉬운 정보의 이용, 사고의 포용, 신체적 부담의 경감, 사용을 위한 적당한 공간의 확보



## **VI. 장애인전용주차구역**

# ● 장애인전용주차구역

## 주차구역 및 주차표지 추진 연혁

-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 의무화(1990.12)
-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(1993.8)
  - 10부제 예외, 주차요금 할인, 계도 위주 단속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세부기준(3.3m x 5.0m) 설정(1998.4)
- 장애인자동차표지 일괄 교체(2003.11)
  - 탈착식,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구분, 유효기간 설정 등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 변경(1~3% → 2~4%) (2004.2)
- 공동주택(아파트)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(2005.7)
- 장애인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, 주차방해행위 신설(2015.8)
  - 보행상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간 표지 재발급 제한
  - 주차방해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

# ● 장애인전용주차구역

##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개요

- (주차구역 이용)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
- (표지 발급대상)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명의 차량 1대, 장애인·국가유공자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차량 1대,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이용하는 차량 등
- (근거) 『장애인등 편의법』 제17조, 『교통약자법』 제10조
  - (복지부)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
  - (국토부) 여객시설, 도로
- (표지발급) '16.12월기준 총 903천건(주차가능 498, 주차불가 405천건)
- (과태료) 불법주차 10만원, 주차방해 50만원,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
  - '15년 152천여건 136억원, '16년 263천건 254억원 과태료 부과
  - \* '11년 12천건 11억, '12년 28천건 25억, '13년 53천건 47억, '14년 88천건 79억원



# ● 장애인전용주차구역

## 추진 상황

-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('14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 2회), 지역별 자체점검
- 주차표지 중복·오류발급 정비
  - 시범사업 실시('16.3~4, 용인시), 전국 읍면동 확산('16.7 이후)
- 주차표지 관리시스템(행복e음) 개선
  - 장애인 사망, 등급변동 등 신상정보 변경시 자동알림 기능
  - 차량 폐차, 매매 등 정보 연계(국토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) 및 알림 기능
  - 불법주차 단속용 앱 개발(11월), 단속 현장에서 바로 조회 가능
  - 행복e음 과태료부과 일괄처리 기능 개선, 보훈처 표지정보 연계(17년 하)
- 주차표지(주차가능) 교체·재발급
  - 명칭 변경 : 장애인자동차표지 →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
  - 기존 표지와 식별이 쉽도록 색상과 모양 변경, 17.1~2월 집중교체



# 표지 디자인 변경

현행



[본인 운전용]



변경

[보호자 운전용]



# ● 장애인전용주차구역

##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





#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리플렛

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인가요?  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 
지금 발급받으세요

아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 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

구분	장애 유형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
지체 장애	상지 절단	○	○	○	○		
	하지 절단						
	상지 관철	○	○	○	○	○	
	하지 관철						
	상지 기능	○	○	○	○	○	
	하지 기능						
신체적 장애	척추 장애						
	변형 장애						
	뇌병변 장애	○	○	○	○		
	시각 장애	○	○	○	○	○	
정신적 장애	청각 장애						
	청력						
	평형						
	언어 장애						
	신장 장애		○				
	심장 장애		○				
	호흡기 장애		○				
	간 장애		○				
	안면 장애						
	장루·요루 장애		○				
정신적 장애	간질 장애						
	지적 장애		○				
	자폐성 장애		○				
	정신 장애						

\* 2011.1.1부터 하지관철 6급 및 척추장애 6급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,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 대상임

## Q&A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 
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▶ 주민등록주소지 해당 주민센터에  
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 
신고해주세요

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 
국민 두루나  
신고 할 수 있습니다



- 1 스마트폰에 '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' 어플 설치
- 2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 실행
- 3 민원인 정보 입력(최초 1회 인증)
- 4 불법 주차차 신고 클릭
- 5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를 클릭 후 촬영
- 6 내용입력을 클릭, 상세유형에서 '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'를 선택한 후 상세내용 입력(신고위치 수정가능)
- 7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 완료 (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 확인)

문의  
보건복지콜센터 129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 
장애인을 위해 비워주세요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



보건복지부

#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리플렛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



주차가 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



## Q&A

약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?

안 됩니다.  
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(5분)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

노인이나 임신부가 주차할 수는 없나요?

안 됩니다.  
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신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

·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!

과태료  
10만원!



·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!

과태료 10만원 +  
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

· 위조/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!  
·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!

과태료 200만원 +  
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

## Q&A

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?

아파트 뿐만 아니라 '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'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

주차방해에 해당하는 경우

-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-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,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-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
-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-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

[ 과태료 50만원 ]

## Q&A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되나요?

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,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





What's next.

What's next.